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편집자 주]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실제 처분 때는 물론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도 건설산업 정보망에 입력토록 했다. 처분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미달 기준의 보완여부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보망에 ‘처분이행관리’ 항목을 추가해 이들 문제업체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등록기준을 허위로 충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심사허점도 대대적으로 보완했다. 대표적 수법인 사채 등을 이용한 자본금 충족시도를 막기 위해 대상업체 예금의 일시성 여부를 확인하는 은행거래내역 확인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상대적으로 약한 조사강도 탓에 처분업체에 불복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주기적 신고의 진단보고서 심사도

진단기준일을 직전월에서 세법상 재무제표 결산일인 직전 회계연도 말로 바꿔 조작을 어렵게 했다.

기술인력 심사자료도 이중취업 확인이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서류 대신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바꾸고 부실진단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불법을 통한 등록기준 충족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이며 현재 준비 중인 연말 등록기준 조사 때부터 가동될 것”이라며 “다만 주기적 신고의 진단기준일 변경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1일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건설업종 추가 등록 때 자본금, 기술능력의 중복인정 세부방식을 둘러싼 업계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도 포함됐다.

건설업 관리규정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1 재무제표상 예금 확인 강화

구분	현행	변경
내용	거래내역 30일	거래내역 60일
이유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② 주기적 신고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내용	직전월 말일	직전 회계연도말(2011. 1. 1.부터 적용)
이유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 3년마다 실시)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

* 주기적 신고 :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을 신고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③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구분	현행	변경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하여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 강화 -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청문과정에서 무혐의 확인된 경우 포함)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함 -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함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처분이행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처분관청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 입력


4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구분	현행	변경
내용	별도의 검증절차 없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이유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하여 진단의 적정성 확보 -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의 감독관청(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경영지도사의 경우 중소기업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 : 진단조서 미제출, 신뢰성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 제출 등

5 기술인력 심사기준 내실화

구분	현행	변경
내용	국민연금 가입서류	고용보험 가입서류
이유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심사를 용이하게 함 -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임



널리 알려진 말의 유래

메이플라워의 맹세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타고 간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였다.

영국에서는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 피신했다가 스피드웰호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다. 스피드웰호는 영국을 출발한 메이플라워호와 만나서 대서양을 함께 항해했는데 결국 도중에서 스피드웰호가 난파하여 침몰하고 만다. 스피드웰호의 승객들은 메이플라워호에 올라탔고, 모든 승객들은 미국에 상륙

하여 신천지를 함께 개척하기로 맹세했다. 이것을 메이플라워의 맹세라고 한다.

처음 목적지였던 버지니아 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던 프라마스 항구에 도착한 신교도들을 필그림 파더즈라고 하는데, 이들의 용감한 정신은 미국의 개척사에 명백히 흐르고 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